



제 437회 국회 (임시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정책펀드 조성·운용의 사전 타당성 검토 절차 등 마련〉

■ 이헌승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7586호)

2026. 7.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문위원 임명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정책펀드 조성 · 운용의 사전 타당성 검토 절차 등 마련(제38조의4 신설)	3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이헌승의원 등 15인

나. 발 의 일 : 2026. 3. 18.

다. 회 부 일 : 2026. 3. 19.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최근 민간 자본시장에 대한 정책적 개입을 확대하기 위하여 수십조원 규모의 재정·공공자금이 투입되는 대규모 금융투자상품 운용을 추진하고 있음.

그러나 그동안 정부가 주도하여 조성·운용한 각종 금융투자상품은 수익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기대에 미치지 못한 사례가 반복되어 왔고, 과도한 정책 개입으로 민간 자본시장의 자원배분 기능을 왜곡하였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정책펀드에 대한 재정 투입의 타당성 등에 대한 사전 검토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펀드 운용과정에서의 목표수익률 설정, 성과 관리,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투명성 확보에 관한 규정도 미흡한 실정임.

이에 정부가 주도하여 민간 자본시장에 투자하는 대규모 정책펀드에 대하여 도입 단계에서부터 필요성과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고, 정책펀드가 조성·운용되는 경우 목표수익률을 명확히 설정·공

개하며, 정책펀드 조성·운용에 관한 의사결정기구의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재정 운용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 38조의4 신설).

Ⅲ. 검토의견

1. 정책펀드 조성·운용의 사전 타당성 검토 절차 등 마련 (안 제38조의4)

현행	개정안
<신설>	○ <u>정책펀드 조성·운용의 사전 타당성 검토</u> - <u>정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을 출연·출자한 정책펀드를 조성·운용하려는 경우, 해당 펀드의 필요성, 재정 투입의 타당성 및 과거 유사 정책펀드의 운용 성과 등에 대한 사전 타당성 검토를 실시하여야 함</u> - <u>정부는 정책펀드를 조성·운용하는 경우 해당 펀드의 목표수익률을 설정하고 정기적으로 고시하여야 함</u> - <u>정부는 정책펀드 조성·운용과 관련한 의사결정기구의 회의록 및 회의 결과를 공개하여야 함(다만, 국가 중대 이익 침해 우려 시 공개 범위 제한)</u>

현행법은 국가가 특정 산업 육성 등 정책 목적 달성을 위해 재정 및 공공자금을 투입하여 정책펀드를 조성·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정부는 국가 정책적으로 중요하나 시장실패의 가능성이 높은 분야에 자금 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부 재정을 지분 투자하는 지원방식의 정책펀드¹⁾를 부처별로 다수 운영하고 있음.

정책펀드는 펀드 구조에 따라 모펀드-자펀드 방식과 단일펀드 방식

1) 국내 정책펀드 현황 및 제도 개선, 자본시장연구원, 2022. 3.

으로 나눌 수 있는데, 모펀드-자펀드 방식의 경우 모펀드는 기업에 직접 투자하지 않고 민간 벤처캐피탈 등이 결성하는 펀드에 출자하는 재간접 펀드로 운용되는데, 이러한 방식으로 운용 시 단년도 예산편성 및 결산방식에서 벗어나 회수재원 재투자도 장기적으로 자금을 공급할 수 있고, 다양한 분야의 자펀드에 분산투자하여 투자리스크를 분산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최근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음²⁾.

대표적으로 중소기업모태펀드(2005년), 농림수산물식품모태펀드(2010년), 노후산단 업종고도화를 위한 산단환경개선펀드(2011년), 한국산업은행 정책펀드(2018년)가 조성되는 등 각 부처별로 정책목적에 따라 정책펀드를 조성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가 출자·출연한 예산을 재원으로 하고 있음에도 재정 투입의 타당성을 사전에 검토하는 절차나 펀드 운용 과정에서의 목표 수익률 설정,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은 미비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국회예산정책처는 ‘중소기업모태펀드 등 정책펀드 종합평가’에서 최근 지역활성화투자펀드, K-콘텐츠·미디어전략펀드 등 개별 부처의 정책펀드 신설이 증가하면서 투자 분야 및 대상 기업의 업력이 중첩되는 등 유사·중복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정책펀드는 운용의 복잡성과 장기성으로 인해 객관적인 성과를 파악하기 어려워

2) 중소기업모태펀드 등 정책펀드 종합평가, 국회예산정책처, 2024.11.

철저한 성과평가 및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음.

이처럼 충분한 사전 타당성 검토나 부처 간 조율 없이 정책펀드가 양적으로 팽창하면서 공공자금 운용의 효율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펀드 운용의 책임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지속적으로 요구되어 왔음.

따라서 개정안은 정부가 대규모 정책펀드를 조성·운용할 경우 도입 단계에서 해당 펀드의 필요성, 시장 대체 가능성 등을 포함한 사전 타당성 검토를 의무화하고, 목표수익률의 정기적 고시 및 의사결정기구의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재정 운용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이는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정책펀드의 도입 단계부터 중복성 및 필요성을 점검한다는 측면에서 입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첫째, 현행법 내 정책펀드에 대한 법적 근거가 既규정되어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최근 「국가재정법」 개정³⁾으로 정책펀드의 정의와 회수재원 재투자 예외 근거 및 국회 보고 의무 등이 신설⁴⁾되었

3) 법률 제21419호, 2026. 3. 10. 개정, 2026. 9. 11. 시행

4) 「국가재정법」 제53조(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 ① ~ ⑤ (생략)

⑥ 국가가 정책적 목적으로 출자·출연한 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따른 벤처투자모태조합, 「농림수산물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농식품투자모태조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펀드(이하 “정책펀드”라 한다)가 출자한 펀드(이하 “자펀드”라 한다)가 청산되는 경우 소관 중앙관서의 장이 미리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는 경우에는 청산금을 국고로 회수하지 아니하고 재투자할 수 있다.

⑦ 수입대체경비 등 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음. 그런데 안 제38조의4제1항에서 정책펀드에 대해 해당 조문에만 국한된 약칭을 별도로 부여하고 있으므로, 조문 간 정합성을 고려하여 정의 규정을 통합하는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둘째, 목표수익률 설정 및 정기적 고시 의무가 정책펀드 본연의 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안 제38조의4제2항은 정책펀드의 목표수익률을 정기적으로 고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정책펀드는 벤처투자모태조합, 중소기업모태펀드 등 민간 자본이 자발적으로 진입하기 어려운 벤처·신성장 분야 등에 자금을 공급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가 있음.

따라서 단기적인 수익성 지표인 목표수익률 달성 여부를 정기적으로 고시하는 경우 운용 주체가 수익 달성에 유리한 안정적 투자처에만 집중하거나 초기 손실 구간을 견뎌야 하는 혁신 기업 투자를 기피하는 등 정책 목적과 상충될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셋째, 사전 타당성 검토의 주체를 정부로 규정함에 따라 집행 및 검증의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질 우려가 있음. 안 제38조의4제1항은 검토 주체를 정부로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절차를 정책펀드를 조성하려는 소관 중앙관서의 장이 직접 수행하는 것인지, 재정 총괄 부처인 기획

제53조의2(정책펀드에 관한 국회보고) 정책펀드의 소관 중앙관서의 장은 해당 정책펀드의 제53조제6항에 따른 재투자 계획, 해당 연도의 회수재원 현황, 투자 현황 및 계정 간 이전 현황 등이 포함된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예산처장관이 주관하여 검증하는 것인지가 법문상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사전 타당성 검토의 주체를 기획예산처장관으로 명시하여 검증의 객관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며, 목표수익률의 설정·고시, 의사결정기구 회의록 공개 등 실제 펀드 관리와 직결된 사항은 정책펀드를 조성·운용하는 소관 중앙관서의 장의 업무로 명확히 구분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

한편, 개정안에 대해 기획예산처 및 중소벤처기업부는 예산 편성 및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책펀드 출자의 필요성·타당성·성과 등을 既검토 중에 있어 별도 절차 신설 시 현행법상 심사절차와 중복되고, 수익성 위주의 운용을 초래해 고위험 혁신기업 투자 기회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투자전략, 포트폴리오 등 영업상 민감한 정보가 노출될 가능성이 있어 우수운용사·민간자본의 참여가 위축될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u><신 설></u>	제38조의4(정책펀드 조성·운용의 사전 타당성 검토) ① 정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재정 또는 공공자금을 출연·출자한 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집합투자기구(이하 이 조에서 “정책펀드”라 한다)를 조성·운용하려는 경우 해당 정책펀드의 필요성, 시장 대체 가능성, 재정 투입의 타당성 및 과거 유사 정책펀드의 운용 성과 등을 포함한 사전 타당성 검토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정책펀드를 조성·운용하는 경우 해당 정책펀드의 목표수익률을 설정하고 이를 정기적으로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정책펀드의 조성·운용과 관련한 의사결정기구의 회의록과 회의 결과 등의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정책펀드 사전 타당성검토 대상의 선정기준과 검토방법, 목표수익률의 고시 주기 및 방법, 의사결정기구의 범위와 정보공개의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현행	개정안
	<u>로 정한다.</u>

문의처
02)6788-5152